

[붙임 1]

배 방 휴 대 지 구 도 시 개 발 사 업
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

[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]

2016. 9



아 산 시

배방 현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

1. 계획명

- 배방 현대지구 도시개발사업

2. 주민의견수렴 개요

2.1 주민의견수렴 실시근거

가. 주민의견수렴 실시근거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(주민 등의 의견 수렴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(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·공람)

나.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(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여부 공개)

2.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·공람

- 공람기간 : 2014. 06. 12 ~ 07. 09
- 공람장소

구 분	공 람 장 소
배방 현대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(안)	아산시청 개발정책과

- 신문공고

구 분	공 고 일	일 간 신 문		주 관
		중 앙 지	지 방 지	
배방 현대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(안)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·공람	2014. 06. 12	아시아 투데이	충청 투데이	아산시

아시아투데이

아시아투데이
ASIATODAY
www.asiatoday.co.kr

아산시 공고 제2014-906호

배방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(안)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

『도시개발법』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(안)과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06월 12일 아 산 시 장

1. 계획의 개요
가. 건 명 : (가칭) 배방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
나. 위 치 : 배방읍 휴대리 산7-1번지 일원
다. 면 적 : 593.71㎡
라. 시 행 자 : (가칭)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
마. 시행방식 : 현지역식

2. 공람기간 및 장소
가. 공람기간 : 2014. 6. 12. ~ 2014. 7. 9. (토, 공휴일 제외)
나. 공람장소 : 아산시청 별관 개발정책과
다. 관계도서 :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(안)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- 실용생략 (아산시청 개발정책과 비치)

3.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설명회 개최
가. 일 자 : 2014. 6. 18. (수) 14:00
나. 장 소 :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대강당
다. 내 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설명

4.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
가. 제출기간 :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
나. 제출방법 : 공람장소 제출 또는 우편제출(성명, 주소, 연락처 기재)
- 아산시 시민로 456(온천동, 아산시청) 개발정책과 ☎041-540-2064
다. 제출서식 :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람장소 비치

충청투데이

충청투데이
www.cctoday.co.kr

아산시 공고 제2014-906호

배방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(안)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

『도시개발법』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(안)과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6월 12일 아 산 시 장

1. 계획의 개요
가. 건 명 : (가칭) 배방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
나. 위 치 : 배방읍 휴대리 산7-1번지 일원
다. 면 적 : 593.71㎡
라. 시 행 자 : (가칭)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
마. 시행방식 : 현지역식

2. 공람기간 및 장소
가. 공람기간 : 2014. 6. 12. ~ 2014. 7. 9. (토, 공휴일 제외)
나. 공람장소 : 아산시청 별관 개발정책과
다. 관계도서 :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(안)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- 실용생략 (아산시청 개발정책과 비치)

3.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설명회 개최
가. 일 자 : 2014. 6. 18. (수) 14:00
나. 장 소 :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대강당
다. 내 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설명

4.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
가. 제출기간 :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
나. 제출방법 : 공람장소 제출 또는 우편제출(성명, 주소, 연락처 기재)
- 아산시 시민로 456(온천동, 아산시청) 개발정책과 ☎041-540-2064
다. 제출서식 :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람장소 비치

아산시 공고 제2014 - 906호

**배방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(안),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**

『도시개발법』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(안)과 『환경영향평가법』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06월 12일

아 산 시 장

1. 계획의 개요

- 가. 건 명 : (가칭) 배방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
- 나. 위 치 : 배방읍 휴대리 산7-1번지 일원
- 다. 면 적 : 593,711㎡
- 라. 시 행 자 : (가칭)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
- 마. 시행방식 : 환지방식

2. 공람기간 및 장소

- 가. 공람기간 : 2014. 6. 12. ~ 2014. 7. 9. (토, 공휴일 제외)
- 나. 공람장소 : 아산시청 별관 개발정책과
- 다. 관계도서 :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(안)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
- 실음생략 (아산시청 개발정책과 비치)

3.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설명회 개최

- 가. 일 자 : 2014. 6. 18. (수) 14:00
- 나. 장 소 :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대강당
- 다. 내 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설명

4.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

- 가. 제출기간 :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
- 나. 제출방법 : 공람장소 제출 또는 우편제출(성명, 주소, 연락처 기재)
- 아산시 시민로 456(온천동, 아산시청) 개발정책과 (☎041-540-2064)
- 다. 제출서식 :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람장소 비치

☒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EIASS) 공고

평가서 초안 공람

사업명	배방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	
사업위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면형 	
	소재지	면적
	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휴대리 일원	593,711 m ²
협의대상 (협의관련법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정계획 	
	[도시개발법]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	
사업구분	도시개발 / 도시개발구역 (도시개발사업)	
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시행자 : (가칭)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 ▪ 승인기관 : 충청남도 ▪ 사업규모 : 593711 m² ▪ 사업비 : 127965 백만원 	

초안공람

주인의견수렴

☐ 협의업무 담당

협의기관	금강유역환경청	담당자	정은정
담당부서		E-mail	ceun@korea.kr
전화번호	042-865-0756	Fax번호	042--

☐ 초안공람

초안	[GG20140253]배방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라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서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000(표지 및 목차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100(요약문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200(개발기본계획의 내용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300(개발기본계획 및 입지 대안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400(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700(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102(자연환경자산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500(지역개발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600(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209(친환경적 자원순환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210(위생공중보건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301(환경친화적 토지이용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302(인구및주거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208(전파장애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105(수질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201(기상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207(말초장애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203(토양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204(소음진동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205(악취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206(온실가스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10502(대기질부록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9000(종합평가 및 결론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10501(동식물상 부록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202(대기질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103(지형지질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101(동식물상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10000(부록).pdf [GG20140253]휴대지구(초안)-08104(위락경관).pdf		
	초안 공고일	2014.06.12	초안공람기간
공람장소	아산시청 별관 개발정책과		
설명회장소	배방읍 주민자치센터 대강당		
설명회일시	2014618 (수) 14:00	의견제출기간	2014.06.12 ~ 2014.07.16

2.3 주민설명회 개최

가. 주민설명회 장소 및 일시

구 분	일 시	장 소
아 산 시	2014. 6. 18(수) 오후 2시	배방읍 주민자치센터 대강당

구 분	설명회 장소	일 시	비 고
아 산 시	배방읍 주민자치센터 대강당	2014. 6. 18(수) 오후 2시	-




2.4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

가.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

구 분	주민의견	충청남도	아산시	금강강유역환경청	비 고
의견제출	있 음	있 음	있 음	있 음	-

2.5 공청회 개최여부 : 없음

3. 주민 등의 의견수렴 조치결과 및 반영여부

가. 주민 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및 반영여부

의견제출자 (기 관)	의 건 요 지	조 치 결 과	비 고
주민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본 사업부지를 지정함에 있어 일부 제척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휴대리 297-9번지 주변까지 편입하여 고속철도 부지 경계선 내 민간토지는 모두 편입하여 추진해주길 바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당해 지번이 입지한 위치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이 불가한 5부능선보다 높은 곳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구역계 포함은 어려움 	미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배방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코자함은 휴대지구는 천안시 신방동과 연접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지에서 제척된 297-9번지 및 산22-4번지 토지 등은 고속철도 경계선까지 사업부지로 편입하여 민간개발이던 자치단체 시행사업이던간에 편입함이 타당하며 일부를 제척시키면 도시의 균형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금번 도시개발사업부지로 지정 편입하여 같이 개발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산22-4번지에 인접한 고속철도구간은 터널구간으로 개발계획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」와 「철도안전법 제45조」에 따라 30m이상의 완충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임 ○현재 구역계는 지적 및 지형여건과 개발 가용지를 고려하여 향후 공사시행시 주변 임야지역에 발생하는 사면부를 검토하여 임야지역의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구역계를 설정한 사항으로서 산22-4번지 등의 임야지역을 추가로 구역계에 포함 시키는 것은 어려움 	미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주민공람 시 계획안의 종교용지의 위치를 전면 도로부분에 일정부분이상(30m) 접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특정일에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용도로서, 이용자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종로변에 접하도록 계획하였음 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종교용지의 면적을 교회가 환지하기로 협의한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조정하여 추가 환지청산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종교시설 면적은 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단계에서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대한 정확한 환지면적 및 청산금의 산정은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향후 실시계획 인가 후 환지계획 수립시 감정평가 결과와 토지소유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	추후반영

나. 충청남도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및 반영여부

의견제출자 (기 관)	의 건 요 지	조 치 결 과	비 고
충청남도 환경정책과	○본 계획은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주택수요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계획으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난개발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	○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,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계획하였음	반 영
	○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항목별 특성,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예측하여 조사범위를 설정하여야 함	○각 항목별 조사범위는 항목별 특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예측하여 조사범위를 설정하였음	반 영
	○상위 계획인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(2011~2020) 중 환경목표와의 부합성,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,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	○상위 계획인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(2011~2020) 중 환경목표와의 부합성,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,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였음	반 영
	○본 계획지역의 녹지자연도 7등급(67,970㎡) 지역은 가급적 훼손을 최소화하여 주변 생태계와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	○계획지구내 경계부 지역에 위치하는 7등급지역은 가급적 훼손을 최소화하였고, 공원 및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변 생태계 및 녹지축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	반 영
	○도시개발에 따른 공사시(절·성토) 등 하류지역으로 토사유입이 되지 않도록 우기시 절·성토공사를 자제하고, 부지 경계지역에 도수로, 가배수로 설치 및 배수구역별 충분한 규모의 침사지를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수립 되어야 함	○공사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우기시 절·성토 공사 자제 및 가배수로, 침사지 설치 등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천안천, 곡교천 등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음	반 영

의견제출자 (기 관)	의 건 요 지	조 치 결 과	비 고
충청남도 환경정책과	<p>○ 동 입지 주변지역 13개 지점(5~840m)의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한 결과 24시간 PM-10기준 예측농도가 최고 70.9$\mu\text{g}/\text{m}^3$로(기준 100$\mu\text{g}/\text{m}^3$)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, 일부 근접지역 (T-9 휴대1리마을, T-6 단독주택, T-5 휴대2리마을회관 등)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풍향에 의한 순간적 먼지 발생량이 초과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(살수시설 강화, 세륜시설 관리강화, 야적장 방진덮개 및 방진막 설치 등)이 마련되어야 함.(p 273)</p>	<p>○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·세차시설 설치,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및 공사차량 방진덮개 설치, 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</p>	반 영
	<p>○ 또한 동 사업 입지에서 인접지역 5개 지역 정온시설(이격거리 5~200m)에서 공사 장비에 의한 예상 소음도가 소음규제기준(65dB)을 2개 지역에서 초과(최고 93.4dB)하는 등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바, 방음판넬 설치 등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추가 저감대책(저소음·저진동 장비 사용, 작업시간 조정 등)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함.(p300)</p>	<p>○ 공사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(2개소, H=6.0m)를 계획하였으며,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소음·저진동 장비 사용 및 작업시간 조정 등의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·제시하였음</p>	반 영
	<p>○ 특히 항타작업, 발파작업시 또는 기타 소음·진동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민원(환경분쟁)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※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-수인한도 : 소음 65dB(A), 진동 65dB(V) -가축 : 소음 60dB(A), 진동 57dB(V), 진동속도 0.02cm/sec -건축물(예민한) : 진동속도 0.3cm/sec</p>	<p>○ 현 단계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단계로 세부적인 토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항타작업 및 발파작업 유무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예측은 불가하나, 주변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계획지구 발파작업시 및 건축물 기초공사시 투입될 수 있는 항타작업시에는 저소음·저진동 공법을 적용토록 할 것이며, 일반 토공사시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측을 실시, 저감대책을 강구하였음</p>	반 영

의견제출자 (기 관)	의 건 요 지	조 치 결 과	비 고
	<p>○향후 기후변화 협약에 의한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대비한 태양열, 지열 등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지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</p> <p>- 지형적 특성,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단지의 공용공간 및 부대 시설과 중대규모의 상업용 건축물 등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,</p> <p>- 특히 저탄소에너지 공급 및 관리계획은 사업 특성,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난방, 냉방, 전기설비 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%이상 유지될 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</p>	<p>○공동주택단지의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과 중대규모의 상업용 건축물 등에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방안과 저탄소에너지 공급 및 관리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%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은 향후 개발구역 고시이후 지정받는 사업시행자가 설계와 병행하여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, 그 결과를 실시계획 인가시 포함토록 하겠음</p>	반 영
충청남도 환경정책과	<p>○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으로 인·허가 기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별지 11호 서식에 따라 인·허가 내용을 인·허가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기관(충청남도 환경정책과)에 통보하여야 하며, 개발사업자는 생태계 훼손면적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</p>	<p>○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인·허가 내용을 인·허가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기관(충청남도 환경정책과)에 통보토록 할 것이며, 개발사업자는 생태계 훼손면적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토록 하겠음</p>	반 영
충청남도 농촌개발과	<p>○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,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</p> <p>※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<u>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(우량농지 보전)</u> 참조</p>	<p>○본 사업계획시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분할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</p>	반 영

의견제출자 (기 관)	의 건 요 지	조 치 결 과	비 고
충청남도 농촌개발과	○ 또한, 편입되는 농지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·농지분야 협의를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서식에 의거 받아야 하며,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(용·배수로 등)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대체시설 설치 시 시설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	○ 편입되는 농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협의토록 할 것이며,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(용·배수로 등)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대체시설 설치 시 시설관리자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	반 영
충청남도 농촌개발과	○ 이와 관련, 사업지구에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은 사업시행전 목적의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취득(무상귀속 등) 절차를 이행하고 농촌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·반영하여 농기계진·출입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	○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·반영하여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	반 영
충청남도 치수방재과	○ 지방하천 천안천 하천기본계획【대전청 고시 제2002 - 181호(20002.12.10.)】과 부합하게 계획하여 도시개발사업 지구계와 하천 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	○ 지방하천 천안천 하천기본계획【대전청 고시 제2002 - 181호(20002.12.10.)】과 부합하게 계획하여 도시개발사업 지구계와 하천 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	반 영
충청남도 치수방재과	○ 국유재산을 무상귀속 받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부합하게 작성하여 실시계획 인가 전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도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유상 매입하여야 함	○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	반 영
충청남도 치수방재과	○ 사업구역 내 소하천 편입 시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아산시 소하천 관련 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	○ 사업구역 내로 편입되는 소하천은 없음	반 영
충청남도 도로교통과	○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시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대상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, 향후 실시계획 인가 전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시행령 별표1」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을 하여야 함	○ 향후 실시계획 인가 전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시행령 별표1」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	반 영

다. 아산시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및 반영여부

의견제출자 (기 관)	의 건 요 지	조 치 결 과	비 고
아산시 환경보전과	○본 검토의견과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제시된 저감방안 및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를 작성하여야 함	○전략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 의견을 본안 작성시 최대한 반영하였음	반 영
	○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하고,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·제시하여야 함	○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하고,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·제시하였음	반 영
	가. 본 검토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의견 간 상충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	○본 검토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의견 간 상충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없음	반 영
	○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,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,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야 함 -특히, 현황조사는 최근 조사결과 및 조사자 인적사항 등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은 그 적용 및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	○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,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가능한 한 정량화시켜 제시하였음 - 현황조사는 최근 조사결과 및 조사자 인적사항 등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은 그 적용 및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음	
	○도로 개설로 인한 동·식물의 이동장애, 먹이 공급지 및 서식환경 교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	○도로 개설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, 공원 및 녹지, 생태축구 등을 설치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	
	○토공사 및 부지정지 공사로 발생하는 사면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안정화 대책을 수립·제시 하여야 함	○공사시 발생하는 사면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안정화 대책을 수립·제시하였음	
	○공사시(절·성토) 토사유실로 인하여 천안천, 곡교천 등으로 토사유입이 되지 않도록 우기시 절·성토공사를 자제하고, 부지 경계지역에 도수로, 가배수로 설치 및 배수구역별 충분한 규모의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하고, 사업완료 후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되어야 함	○공사시 토사유실로 인하여 천안천, 곡교천 등으로 토사유입이 되지 않도록 우기시 절·성토공사를 자제하고, 부지 경계지역에 도수로, 가배수로 설치, 적정 규모의 임시침사지검저류지를 설치토록 할 것이며, 사업완료 후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저류지를 설치하였음	

의견제출자 (기 관)	의 건 요 지	조 치 결 과	비 고
아산시 환경보전과	○공사 시, 부지정지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므로 세륜·세차시설 설치 등 각종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공사시 부지정지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방진망 및 세륜·세차시설 설치, 주기적인 살수 등의 저감대책을 강구·제시하였음	반 영
	○인접지역 5개 지역 정온시설에서 공사장비 등 투입장비에 의한 예상 소음도가 소음규제기준(65dB)을 초과(최고 93.4dB 포함 2개 지점)하는 등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바, 방음 판넬 설치 등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추가 저감대책(저소음·저진동 장비 사용, 작업시간 조정 등)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함	○공사시 소음예측결과, 2지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가설방음판넬 설치(H=6.0m) 및 장비의 분산투입, 작업 시간 조정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하였음	반 영
	○사업부지 주변 축사시설이 악취유발 시설 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황조사 시 축사 악취로 인한 영향이 배재된 바, 주변 축사의 분포를 확인하여 악취현황조사에 포함해 주기 바람	○사업부지 주변의 축사시설의 분포여부를 확인하여 제시하였으며, 사업지구내 악취현황을 조사하였음	반 영
	○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,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	○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며,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하겠음	반 영

마. 금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및 반영여부

의견제출자 (기 관)	의 견 요 지	조 치 결 과	비 고
금강유역 환 경 청	○본 검토의견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으로, 아래 의견을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	○전략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 의견을 본안 작성시 최대한 반영하였음	반 영
	○전략 환경영향평가서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되,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명확히 검토하고,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	○전략 환경영향평가서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,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명확히 검토하고,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	반 영
	○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내용은 명확성·구체성·실현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고, 조사지점, 예측방법, 예측시 사용된 계수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.	○전략 환경영향평가서는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이 확보된 내용으로 작성하였음	반 영
	○동 사업 목적과 상위계획(도시기본계획, 하천기본계획 등)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·제시하여야 함	○상위계획(도시기본계획, 하천기본계획 등)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·제시하였음	반 영

의견제출자 (기 관)	의 건 요 지	조 치 결 과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사업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위치와 시기,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 및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사업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 및 선정사유를 제시하였음 	반 영
금강유역 환 경 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지구 내 양호한 자연식생 및 자연지형의 보전을 위하여 경사도 20° 이상이면서 동시에 녹지자연도 7등급인 지역은 계획에서 배제하거나 최대한 원형보전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. - 위 의견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, 그 결과 제시 - 토지이용계획, 경사도 및 녹지자연도와와의 중첩도면 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지구내 경사도 20° 이상이면서 동시에 녹지자연도 7등급인 지역에 대하여 경사도 및 녹지자연도와 중첩하여 제시하였음 - 경사도 20° 이상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 중 토지이용계획(지형, 계획고)을 고려한 원형보전녹지 가능지역을 표기하였으며, 원형보전지역은 실시설계시 추가적인 지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원형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음 	반 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서에는 동·식물상에 대한 현지조사가 2010년, 2013년 3월에 실시됨으로써 조사결과가 본 계획지구의 동·식물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,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현지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그 결과와 저감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- 동·식물종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(6~9월)에 현지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동·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제시 - 법정보호종의 서식·출현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세한 현황정보(증명, 법정지정 내용, 서식지점, 이격거리 등)와 저감방안 제시 ※ 법정보호식물, 법정보호 양서류(맹꽁이)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·식물상에 대하여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2014년 9월, 2015년 6월에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영향을 예측하였고,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·제시하였음 - 2014년 9월, 2015년 6월 전문가 추가조사시 법정보호종의 서식·출현은 확인되지 않았으며, 맹꽁이에 대한 조사결과 맹꽁이의 서식·출현은 확인되지 않았음.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탐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,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법정보호종 및 맹꽁이의 서식·출현은 확인되지 않았음. 	반 영

의견제출자 (기 관)	의 건 요 지	조 치 결 과	비 고
금강유역 환 경 청	<p>○부지 내 하천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 시 하천수질 악화 및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침수 우려지역은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하천수질 및 하천 변 보호를 위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</p> <p>- 하천수계와 인접한 지역에는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를 배치하여 비점 오염원으로 인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</p>	<p>○계획지구내에 소하천을 포함하고 있으나, 수로폭이 좁고, 공사 및 운영 시 우수배체계획을 수립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, 천안천과 인접한 지역에는 수변공원을 계획하였으며, 비점오염저감을 위하여 저류지 설치를 계획하였음</p>	반 영
	<p>○공사 시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, 지형 등을 고려하여 유하선 분석 등을 실시한 후 배수구역을 산정하고, 적정 처리효율이 유지되는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계획하여야 함</p> <p>- 침사지, 가배수로 등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,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대책 수립</p>	<p>○지형 등을 고려하여 유하선 분석 등을 실시한 후 배수유역을 산정하고, 적정 처리효율이 유지되는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계획토록 하여 부지 내 천안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음</p> <p>-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, 0.2mm 까지 포착할 수 있는 소요 최소면적과 공사시 홍수조절지 기능까지 고려하여 계획하였음</p>	반 영
	<p>○사업시행 시 불투수층이 증가하고 홍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전·중·후의 홍수유출량 변화를 예측하고 사업으로 인하여 홍수 유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·제시 하여야 함</p>	<p>○사업 전·중·후의 홍수유출량 변화를 예측하고 사업으로 인하여 홍수 유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영구저류지 및 수변공원 계획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하였음</p>	반 영

의견제출자 (기 관)	의 건 요 지	조 치 결 과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구체적인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강구·제시하여야 함. - 저류시설 설치계획을 제시한 바,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함 · 퇴적토 및 침전물 준설이 쉬운 구조로 하고, 준설을 위한 장비 진입로 등 확보 - 사업지구 내 부지 및 주차장 등의 불투수성 포장을 지양하고 투수성이 좋은 친환경적 투수성 포장(잔디, 자갈, 유공포장 등)계획 수립 ※ 저영향개발(LID) 기법 적용 매뉴얼(환경부, 2013)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본 사업지구의 저류지는 1개소로 계획하였으며, 저류지외에 투수성포장 및 잔디블럭 등을 계획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킬 계획이며, 천안천과 인접한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- 저류시설의 세부적인 설계는 실시계획시 수립하겠으며, 퇴적토 준설을 위한 진입로 확보계획을 반영하겠음 	반 영
금강유역 환경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사업지구 인근 주요 대기오염원(소각장, 발전소, 산업단지, 매립장, 하수처리장 등)이 분포하고 있는지 최근 자료를 제시하고 오염물질로 인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- 오염원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현황농도,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정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평가결과를 토대로 입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- 사업지구와 170m 이격하여 천안공공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접한 사업부지에 차폐림을 조성하는 등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사업지구 인근 주요 대기오염원(하수처리장 등) 분포현황에 대하여 최근 자료(측정)를 검토하여 제시하였으며, 오염물질로 인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음 - 악취물질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도가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- 천안공공하수처리장에 인접한 사업부지변으로 계획한 수변공원에 차폐림을 조성하여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	반 영

의견제출자 (기 관)	의 건 요 지	조 치 결 과	비 고
금강유역 환 경 청	○본 계획은 생태면적을 적용 대상사업으로 「생태면적률 적용지침」에 따라 최소달성목표를 준수하여야하므로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「생태면적률 적용지침」에 따라 최소달성목표를 준수하여 31.1%이상으로 계획하였음	반 영
	○생활용수 공급계획과 발생 오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주변 환경기초시설 현황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- 사업대상지 인근에 신설배수지를 계획한 바 신설시기, 용량, 용수공급 대상구역, 공급량, 여유용량 등을 제시하고 사업시행 후 용수공급 시설 용량의 적정성 분석·제시 - 발생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므로,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 가능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자료를 첨부·제시	○생활용수 공급계획과 발생 오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주변 환경 기초시설 현황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○본 개발계획 단계에서는 배수지용량 검토를 토대로 신설배수지의 용량을 5,000㎡으로 계획하였으며,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배수지 규모를 최종 선정할 계획임 ○발생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토록 협의하였으며, 아산시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를 첨부하였음	반 영
	○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및 해당 지자체 지역 환경기준 등과 연관성을 제시하고,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	○각 항목별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및 아산시의 환경기준 등을 비교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예측을 실시하였으며, 영향이 예상될 경우에는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였음	반 영
	○공사 시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발생소음도 예측결과,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는 바, 소음피해 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공사시 소음예측결과, 2지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가설방음판넬 설치(H=6.0m) 및 장비의 분산투입, 작업시간 조정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하였음	반 영

의견제출자 (기 관)	의 건 요 지	조 치 결 과	비 고
금강유역 환 경 청	○철도와 인접한 상업용지 주변으로는 완충녹지를 확대하는 등 소음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	○철도와 인접한 상업용지 및 공동주택변으로는 35~90m 폭원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였음	반 영
	○종로 이상 도로와 인접한 단독·공동주택 용지 주변으로는 완충녹지 확보, 건축선 이격, 직각배치 등 소음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- 완충녹지의 폭 및 식재할 수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·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시각적으로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음벽 설치방안 마련	○계획중인 광로 경계부에 인접한 단독·공동주택 용지 주변으로 소음·대기질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충녹지를 확보하였음 한편, 대로의 경우 상업용지 및 준주거시설 용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완충녹지의 설치가 불필요하며, 종로변으로 위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추후 조경녹지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겠음 - 완충녹지의 폭 및 식재수종 중 대표수종 등은 제시하였으며, 식재수량 및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경설계와 병행하는 환경영향평가기제시도록 하겠음 - 광로변으로 설치예정인 방음벽의 경우는 시각적으로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음벽 재질을 선정토록 하겠음	반 영
	○지속가능한 발전(ESSD)을 위해 사업계획지구 내 녹지공간 추가확보,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치, 신재생에너지 사용, 빗물·중수도 재이용 등 친환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 - 건축물에는 절수형 변기,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 등 물 사용량 절감계획을 검토·제시	○계획지구 개별 건축물 수립시 조경녹지를 확보토록 하겠으며, 건축물 계획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,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계획하고, 공동주택의 경우 빗물재이용시설을 수립토록 할 계획임. 한편 오수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할 계획으로 중수도의 재활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. - 건축물의 절수형 기기 등은 반영하였음	반 영

의견제출자 (기 관)	의 건 요 지	조 치 결 과	비 고
금강유역 환경청	○우리청의 검토의견, 타 행정기관의 의견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해당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·제시하여야 함.	○초안 검토의견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요약하여 반영여부를 제시하였음	반영
	○환경현황 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(조사자 인적사항, 소속, 전공, 조사 일시, 조사 방법, 조사 경로, 사진, 용역 여부 및 조사자 의견서 등)를 제시하여야 함.	○환경현황 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음	반영
	○동 사업과 관련한 근거(관련법 및 행정계획 등)는 세부적인 내용을 명기하거나,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.	○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근거 등은 세부내용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음	반영